<붙임>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소관 규정 변경사항 반영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등(이하 "조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등(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국방품질경영제체 인증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 구체화 및 현실화 (업체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는 별표 제1호에 따르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KS Q ISO 9001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는 별표 제1호에 따르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KS Q ISO 9000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오기 수정
제4조(기본방침) ① ~ ③ (생략) ④ 인증심사는 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국방품질경영체제와 ISO 9001 인증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ISO 9001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KS Q ISO 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 및 심사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인증심사는 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국방품질경영체제와 ISO 9001 인증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ISO 9001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매뉴얼로 정한다.	- 지침수준으로 명시 (매뉴얼명 또는 구성체계 변경 가능)
제5조(인증범위) 인증범위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이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 인증조직(사업장)과 제품 및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범위 결정은 다음	**제5조(인증범위)** ①인증범위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이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 인증조직(사업장)과 제품 및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범위 결정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의 각 호와 같다. ~ 2. 생략 3. 제품 및 활동에서 제품은 별표 제3호의 인증분야 및 분류지침에 따라 소분류 단위로 결정하고, 활동은 설계 및 개발, 제조(또는 건조) 중 해당되는 활동을 표기한다.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동일) 3. 제품 및 활동에서 제품은 별표 제3호의 인증분야 및 분류지침에 따라 소분류 단위로 결정하고, 인증 활동분야는 별표 제3호에 따라 분류하며, 범위는 "설계, 개발 및 제조", "제조"(함정 건조를 포함하며 세부업종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해당되는)로 구분한다.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개정 사항 반영
<신 설>	②인증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의 인증기준이 개정될 경우 개정내용 적용시점 및 이를 반영한 심사방법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개정 사항 반영
제6조(인증신청 대상 및 자격) ① 인증신청조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략)	**제6조(인증신청 대상 및 자격)** ① 인증신청조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2. 법 제3조 제9의2호의 정의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 3.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 ② (현행과 동일)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개정에 따라 내용 구체화
제7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최초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품원의 품보담당부서에	**제7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최초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품원의 품보담당부서에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출한다. 1. ~ 2. (생략) 3. 인증신청범위의 생산 및 납품실적(별지 제1-2호 서식)과 해당 증빙자료 4. ~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출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인증신청범위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 및 납품실적(별지 제1-2호 서식)과 해당 증빙자료 4. ~ 10. (현행과 동일)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출목적 명확화 (인증범위 관련성 입증용)
제8조(인증신청서 검토) ①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품보담당부서장은 심사협력자를 지정하여 인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검토 자료를 포함하여 7근무일 이내에 인증업무 주관부서로 인증심사를 의뢰한다. 1. (생략) 2. 인증(신청)분야 및 세부품목 현황(별지 제2-1호 서식) 3. (생략)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8조(인증신청서 검토)** ①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품보담당부서장은 심사협력자를 지정하여 인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검토 자료를 포함하여 7근무일 이내에 인증업무 주관부서로 인증심사를 의뢰한다. 1. (현행과 동일) 2. 인증(신청)분야 품목의 생산 및 납품실적 확인 결과(별지 제2-1호 서식) 3. (현행과 동일) ② ~ ④ (현행과 동일)	확인목적 명확화 (인증범위 관련성 확인)
제13조(서면심사) ① 서면심사는 인증신청조직의 현장에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 6. (생략) 7.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계획 및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신청조직이 현장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수준이 입증하고 있는지를 평가 ② ~ ⑥ (생략)	**제13조(서면심사)** ① 서면심사는 인증신청조직의 현장에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 6. (생략) 7. 내부심사와 경영검토 계획 및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신청조직이 현장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수준이 입증하고 있는지를 평가 ② ~ ⑥ (생략)	오기수정
제15조(현장심사) ① ~ ② (생략) ③ 현장심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15조(현장심사)**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현장심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인증기준 중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 1. ~ 5. (생략) ④ ~ ⑩ (생략)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내부시험, 식별과 추적성, 불합격품 관리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확인한다. 1. ~ 5. (현행과 동일) ④ ~ ⑩ (현행과 동일)	품질보증활동과 직결되는 심사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여 품질 보증 활동과 연계성 강화
제17조(시정조치) ① 심사팀은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종료회의 시 인증신청조직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조치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심사팀의 시정조치결과 확인자로 지정된 자는 조직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서를 접수하여 부적합의 근본원인, 시정조치 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적절성, 충분성 및 효과성을 관련 문서와 이행 기록 및 실태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시정조치가 타당할 경우 시정조치 결과서의 확인란에 결과를 기록하고 서명한 후 심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정조치결과 확인자는 조직의 시정조치결과가 타당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은 시정조치보완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만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조치)** ① 심사팀은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종료회의 시 인증신청조직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조치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심사팀장은 조직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서를 접수하여 부적합의 근본원인 분석, 부적합 제거 등 시정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적절성, 충분성 및 효과성을 관련 문서와 이행 기록 및 실태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시정조치가 타당할 경우 시정조치 결과서의 확인란에 결과를 기록하고 서명한 후 심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심사팀장은 조직의 시정조치결과가 타당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은 시정조치 보완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팀장은 조직이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서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중부적합 사항 또는 시정조치 결과서만으로 적절성 확인이	용어 사용 명확화 시정조치결과확인 내실화 시정조치 결과서 내용의 명확화 (KS Q ISO 9000 2015 용어 정의 참조) 시정조치결과확인 내실화 시정조치 결과 확인방법 현실화 (단순한 사항은 문서확인으로 완료 여부 평가가능) 문장명확화 및

현 행	개 정(안)	비 고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확인을 한다.	에스아이케이 심사 완료 지연 관련 감사 후속조치 사항 반영
⑥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최초(현장), 갱신 및 변경심사 과정에서 인증(신청)조직이 부적합 사항에 대해 요구한 시정조치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하고 부적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심사 과정에서 인증조직이 부적합 사항에 대해 요구한 시정조치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최초(현장), 갱신 및 변경심사 과정에서 인증(신청)조직이 부적합 사항에 대해 요구한 시정조치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인증 적격심의)제2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고 부적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심사 과정에서 인증조직이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인증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시정조치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할 수 있다.	의미 명확화
제19조(사후관리심사) ① 사후관리심사는----------정기 사후관리심사와 특별 사후관리심사로 구분한다. 1.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인증조직의 품질경영체제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중에 <u>연 1회 이상</u>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별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보담당부서 등의 요청 또는 인증업무주관부서의 결정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목의~~ 심사 사유와 관련된 품질경영체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가. 품질경영활동 중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	**제19조(사후관리심사)** ① 사후관리심사는----------정기 사후관리심사와 특별 사후관리심사로 구분한다. 1.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인증조직의 품질경영체제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중에 매년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별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보담당부서 등의 요청 또는 인증업무주관부서의 결정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사유와 관련된 품질경영체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가. 품질경영활동 중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명확화)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명확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려되는 경우 나.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산요소의 중대한 변경(주요 공정 및 생산시설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 인명의 손상, 재산의 손실, 법규위반, 범죄, 비리 등과 관련된 인증조직의 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여러 요소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라.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려되는 경우 나.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산요소의 중대한 변경(주요 공정 및 생산시설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 물품의 결함으로 인명손상, 정부재산손실, 리콜 등과 같은 인증업체의 사회적 품질 이슈가 발생한 경우 라. 품질경영과 관련된 법규위반, 범죄, 뇌물 공여, 비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개정사항 반영(명확화)
<신 설>	마. 인증업체의 하자발생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횟수가 별표 제7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업무주관부서는 이의 해당여부확인을 위해 매 반기마다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조사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개정사항 반영(원장 지시 및 보고사항 반영)
②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현장심사이지만 전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 설>	②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현장심사이지만 전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동일) 8.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내부시험, 식별과 추적성, 불합격품 관리	품질보증활동과 직결되는 심사항목을 인증심사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여 품질보증활동과 연계성 강화
③ ~ ⑨ (생략) <신 설>	③ ~ ⑨ (현행과 동일) ⑩ 사후관리심사 결과 인증 취소	「방위사업 품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 의뢰를 생략하고 바로 인증 취소를 의뢰한다. ⑪ 제 2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인증조직의 소송으로 인하여 인증취소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집행정지 인용결정) 정기사후관리심사 및 제 20조에 의한 갱신심사를 순연할 수 있다.	관리규정」개정 사항 반영 인증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의 경우 정기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를 순연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제20조(갱신심사) ① (생략) ② 갱신심사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0조(갱신심사)** ① (현행과 동일) ② 갱신심사는 현장심사만 실시하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동일)	갱신심사 시 수행하는 심사항목 명시
제22조(인증 적격심의) ① ~ ④ (생략) <신 설>	**제22조(인증 적격심의)**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적격심의는 현장심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 심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심의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인증적격심의 지연방지 및 업체 책임강화를 위해 적기 시정조치 처리가 안될 경우 처리절차 명시
제23조(부적격업체) 제13조제5항, 제15조제10항,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통보된 인증(신청)조직은 부적격으로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23조(부적격업체)** 제13조제5항, 제15조제10항,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통보된 인증(신청)조직은 부적격으로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개정 사항 반영
제24조(인증서 발급의뢰) ① (생략) ② 인증서의 재발급 의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재발급 의뢰 가. 갱신심사 결과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되고, 조직 시	**제24조(인증서 발급의뢰)** ① (현행과 동일) ② 인증서의 재발급 의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재발급 의뢰 가. 갱신심사 결과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되고, 조직 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정조치 결과에 대한 심사팀의 완료 확인 후 제1항과 같이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에 인증서의 재발급을 의뢰한다. 나. (생략) 2. (생략) 3. 조직(사업장)의 명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에 재발급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정조치 결과에 대한 심사팀의 완료 확인 후 제1항과 같이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에 인증서의 재발급을 의뢰한다. 나.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조직(사업장)의 명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에 재발급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에 따른 연계 수정
제25조(인증효력 및 인증취소 의뢰) ① (생략) ②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거쳐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에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제2호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2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인증 취소를 통보받은 조직이 인증을	**제25조(인증효력 및 인증취소 의뢰)** ① (원안과 동일) ②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거쳐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에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1. ~ 4. (원안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심사를 1회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심사 결과 바로 직전의 사후관리 심사결과와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④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인증 취소를 통보받은 조직이 인증을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에 따른 연계 수정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개정에 따라 내용 구체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재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심사 절차(인증신청 및 심사)에 따르며, 인증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재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심사 절차(인증신청 및 심사)에 따르며, 인증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개정 내용 반영
제26조(이의제기 및 불만 등) ① 인증업무주관부서는 인증조직으로부터 이의제기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 7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해당 인증조직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제26조(이의제기 및 불만 등)** ① 인증업무주관부서는 인증조직으로부터 이의제기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 7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해당 인증조직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보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안과 동일)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개정 내용 반영
제27조(인증조직의 책임) ① ~ ② (생략) ③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조직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할 경우 ---------- 점검한다. 1. 인증범위 및 적용규격 등을 인증서에 명시된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2. 제품인증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인증의 의미로 홍보하는 경우 3. 인증의 취소 시에도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 ④ 인증조직이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 및 기품원 인증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이때 인증서 원본은 인증조직이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조직의 책임)**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조직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할 경우 ---------- 점검한다. 1. 인증범위 및 적용규격 등을 인증서에 명시된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2.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이 유효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3. 기타 인증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④ 인증조직이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및 기품원 인증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이때 인증서 원본은 인증조직이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개정 내용 반영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사항반영
별표 및 별지 **1. 별표** <신 설>	**별표 및 별지** **1. 별표**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 제7의 특별사후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 고</th></tr>
<tr><td></td><td><table><tr><th>순서</th><th>제목</th></tr><tr><td>별표 제7호</td><td>하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특별사후관리 대상 선정기준</td></tr></table></td><td>관리심사기준 추가</td></tr>
<tr><td>【별표 제1호】
<u>용어 정의</u>

1. 부적합(nonconformity)
<u>요구사항의 불충족. 즉, 명시적인 요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에 대한 불충족</u>
2. 중부적합(major nonconformity)
<u>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품질경영체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u>
<u>비고. 다음 상황에서의 부적합은 중부적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u>
<u>-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적용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누락이 있거나 현저한 부족이 있는 경우</u>
<u>- 한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다수의 경부적합이 발견된 경우</u>
<u>- 부적합품의 출하 또는 출하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합, 불합격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 또는 의도된 목적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u>
<u>- 판단과 경험으로 보아 부적합이 시스템의 불합격을 초래하거나 또는 관리된 공정 및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u></td><td>【별표 제1호】
<u>용어 정의</u>

1. 부적합(nonconformity)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한다.

2. 중부적합(major nonconformity)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품질경영체제 및 체제 이행 시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인증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의 요구사항 중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현저한 부족이 있는 경우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 항목 중 1개의 항목기준에서 4건 이상의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 불량품이 출고되거나 출고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합이 있는 경우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의도된 목적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업체 품질경영체제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
• 사용자불만이 재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인</td><td>제정된「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의 별지 제1호(용어의 정의)와 일치화

제정된「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의 별지 제1호(용어의 정의)와 일치화</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 고</th></tr>
<tr><td>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후속되는 사후관리심사에서 동일한 경향으로 재발하는 경부적합이 있는 경우 또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시스템이 후퇴 또는 붕괴된 경우
- 재발되는 고객 불만에 대한 원인조사 및 조치 기록이 없는 경우
- 해당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요구사항의 준수 실패
3. 경부적합(minor nonconformity)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품질경영체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적합
비고. 다음 상황에서의 부적합은 경부적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조직의 품질경영체제의 어느 한 요구사항의 준수에 있어서 단일 또는 그 이상의 관찰된 실패
- 판단과 경험으로 보아 관리된 공정 및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경영체제의 능력을 감소
- 조직의 문서화된 품질경영체제의 일부분에서의 부적합</td><td>조사 및 조치가 없는 경우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과 관련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연속해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3. 경부적합(minor nonconformity)
부적합사항 중 중부적합 이외의 부적합사항을 말한다.</td><td>제정된「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의 별지 제1호(용어의 정의)와 일치화</td></tr>
<tr><td>【별표 제2호】
분야별 인증범위 및 코드</td><td>【별표 제2호】
분야별 인증범위 및 코드
1. 무기체계
<table><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코드</th></tr><tr><td>지휘통제·통신</td><td>지휘통제 체계</td><td>가-01</td></tr></table></td><td></td></tr>
</table>

현 행	개 정(안)	비 고

코 드	분 야	코 드	분 야
A01	총기류	D08	항법장비류
A02	화포류	D09	기상관측장비류
A03	자주화기류	D10	통신전자부품류
A04	기계/광학식사통장비	E01	고정익
A05	총포부품류	E02	회전익
B01	완성탄	E03	보조기기류
B02	추진제류	E04	항공 엔진류
B03	신관류	E05	무인항공기
B04	탄약부품류	E06	항공기부품류
C01	궤도차량류	F01	전투/지원함정류 건조
C02	장륜차량류	F02	보조선박류 건조
C03	공병장비류	F03	잠수함정류 건조
C04	일반장비류	F04	함정탑재 장비류
C05	기동부품류	F05	함정부품류
D01	정보, 전자전 장비류	G01	식품류
D02	통신장비류	G02	섬유류
D03	유도무기류	G03	화학제품류
D04	전자 사통/광학장비류	G04	화생방장비 및 물자류
D05	레이다장비류	G05	일반보급류
D06	전원장비류	G06	의무보급류
D07	청음장비류		

대분류	중 분 류	코드
	통신체계	가-02
	통신장비	가-03
감시 · 정찰	전자전장비	나-01
	레이더장비	나-02
	전자광학장비	나-03
	수중감시장비	나-04
	기상감시장비	나-05
	그 밖의 감시 · 정찰장비	나-06
기동	전 차	다-01
	장 갑 차	다-02
	전투차량	다-03
	기동 및 대기동 지원장비	다-04
	지상무인체계	다-05
	개인전투체계	다-06
함정	수 상 함	라-01
	잠수함(정)	라-02
	전투근무 지원정	라-03
	해상전투 지원장비	라-04
	함정무인 체계	라05
항공	고정익 항공기	마-01
	회전익 항공기	마-02
	무인 항공기	마-03
	항공전투 지원장비	마-04
화력	소화기	바-01
	대전차화기	바-02
	화 포	바-03
	화력지원장비	바-04
	탄 약	바-05
	유도무기	바-06
	특수무기	바-07
방호	방공	사-01
	화생방	사-02
	EMP방호	사-03
기타	국방M&S체계	아-01
	기타	아-01

2. 전력지원체계

대분류	중 분 류	코드
전투지원장비 (부품)	일반차량	자-01
	특수차량	자-02
	전원 · 동력장치	자-03
	감시지원장비	자-04
	정비장비	자-05
	탄약 · 유도탄 장비	자-06
	전투지원일반장비	자-07
	측정장비	자-08
	통신전자장비	자-09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 고</th></tr>
<tr><td></td><td>
<table>
<tr><th>대분류</th><th>중 분 류</th><th>코드</th></tr>
<tr><td rowspan="3"></td><td>개인화기지원장비</td><td>자-10</td></tr>
<tr><td>근무지원장비</td><td>자-11</td></tr>
<tr><td>수리부속</td><td>자-12</td></tr>
<tr><td rowspan="10">전투지원물자</td><td>방탄류</td><td>차-01</td></tr>
<tr><td>피복 · 장구류</td><td>차-02</td></tr>
<tr><td>식량류</td><td>차-03</td></tr>
<tr><td>화학 물자류</td><td>차-04</td></tr>
<tr><td>유류</td><td>차-05</td></tr>
<tr><td>특수섬유물자</td><td>차-06</td></tr>
<tr><td>탄약 · 유도탄물자</td><td>차-07</td></tr>
<tr><td>전기 · 전자물자</td><td>차-08</td></tr>
<tr><td>근무지원물자</td><td>차-09</td></tr>
<tr><td>인쇄 물자류</td><td>차-10</td></tr>
<tr><td rowspan="2">의무지원물품</td><td>의무장비</td><td>카-01</td></tr>
<tr><td>의무물자</td><td>카-02</td></tr>
<tr><td rowspan="3">교육훈련물품</td><td>교육훈련장비</td><td>타-01</td></tr>
<tr><td>교육훈련물자</td><td>타-02</td></tr>
<tr><td>교육훈련용탄약</td><td>타-03</td></tr>
<tr><td rowspan="3">국방정보시스템</td><td>자원관리정보체계</td><td>파-01</td></tr>
<tr><td>국방M&S체계</td><td>파-02</td></tr>
<tr><td>기반운영 환경</td><td>파-03</td></tr>
</table>
</td><td></td></tr>
<tr><td>【별표 제3호】
<u>인증분야 및 분류 지침</u>
1. 인증분야는---------- 바에 따른다.
가. 분야 코드 : 인증신청서의 신청 분야에 해당됨.(별표 제2호 분야별 인증범위 및 코드 참조)

~~▷ A00~~
~~- A : 대분류 코드(분야별 A ~ G)~~
<table>
<tr><th>코드</th><th>인증분야</th><th>코드</th><th>인증분야</th><th>코드</th><th>인증분야</th><th>코드</th><th>인증분야</th></tr>
<tr><td>A</td><td>총포</td><td>B</td><td>탄약</td><td>C</td><td>기동장비</td><td>D</td><td>통신전자</td></tr>
<tr><td>E</td><td>항공</td><td>F</td><td>함정</td><td>G</td><td>일반물자</td><td>–</td><td>–</td></tr>
</table>
~~- 00 : 중분류 코드(항목별 숫자로 구분 01, 02,....)~~
~~* 별표 제2호 분야별 인증범위 및 코드 참조~~
나. 소분류 : 인증신청서의 신청범위에 대한 기술적 <u>특성임.</u>
<u>1) 품류 구분 : 장비별 또는 기술(제조 및 기능) 특성이 유사한 그룹으로 인증분야의 최소 단위로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품류를 분</u></td><td>【별표 제3호】
<u>인증분야 및 분류 지침</u>
1. 인증분야는---------- 바에 따른다.
가. 분야 코드 : 인증신청서의 신청 분야에 해당됨.(별표 제2호 분야별 인증범위 및 코드 참조))

<삭제>

나. 소분류 : 인증신청서의 신청범위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며 장비 또는 기술(제조 및 기능) 특성이 유사한 그룹으로 인증분야의 최소단위로 다음에 따라 분류한다.</td><td>별표 제2호 변경에 따른 보완

별표 제2호 변경에 따른 보완</td></tr>
</table>

현 행	개 정(안)	비 고
류한다. 가. 제품의 특성 - 제품의 구성 및 가공절차 - 제품의 성능 및 용도 나. 원자재(부품포함) 특성 다. 생산시설, 제조방법, 시험/검사장비 등 2) 품류 구분 방법 ▷ 기동장비분야 : - 전차류 또는 장갑차류 등으로 구분 ▷ 탄약분야 : - 기계식 또는 전자식 신관류로 구분 - 소구경 탄약류(Cal.50 이하), 20미리 발칸탄류 등 구경 및 특성별 구분 ▷ 함정분야 : 장비별 또는 기술특성 분류 중 선택가능 - 장비별 분류 : 호위함류, 기뢰부설함류 등 장비특성별 구분 - 기술특성 분류 : 강선분야 수상함(00급) 및 00장비 탑재 설계 및 제조(건조), FRP선박 건조, 수중함 건조(00급) 2. (생략)	1)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 별표 제2호 분야별인증범위 및 코드의 분야를 기준으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별표 제2-1호, 제2-2호의 대상장비 수준으로 소분류를 선정 예) 기관총탄, 구축함, KUH-1, 중형전술차량, 소부대무전기, 방탄헬멧, 전투복류 등 2) 주요 제조품목이 부품 등으로 별표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세세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선정 (사례) 스프로켓류 :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25924) 2. (현행과 같음)	
【별표 제3-1호】 **인증범위 관련성 판단기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소분류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유사범위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명확히 분류가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로 판단하고, 유사범위에 대한	【별표 제3-1호】 **인증범위 관련성 판단기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는 소분류 단위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인증 조직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소분류) 내 조직의 생산실적 범위(품목)와 계약목적물	인증범위 관련성 판단기준 명확화를 통해 민원 발생 방지('19년 민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 고</th></tr>
<tr>
<td>자료가 없거나 분류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는 다음 표에 따라 인증범위의 관련성을 판단한다.
<table>
<tr><th>구분</th><th>판단 기준</th></tr>
<tr><td>~~직접 적용~~</td><td>~~○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내 조직의 생산실적 범위와 계약목적물이 일치하는 경우로서 기 인증된 품질경영체제를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경우~~</td></tr>
<tr><td>활용</td><td>(생략)</td></tr>
<tr><td>포함</td><td>(생략)</td></tr>
</table>
</td>
<td>이 일치하면 ‘직접 적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증범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목적물이 인증범위인 소분류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라 인증범위의 관련성을 판단한다.
<table>
<tr><th>구분</th><th>판단 기준</th></tr>
<tr><td>활용</td><td>(원안과 동일)</td></tr>
<tr><td>포함</td><td>(원안과 동일)</td></tr>
</table>
</td>
<td>원 1건 발생)</td>
</tr>
<tr>
<td>【별표 제6호】
<u>심사수수료 산정기준</u></td>
<td>【별표 제6호】
<u>심사수수료 산정기준</u>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별지 제13호로 전면 수정</td>
<td>「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개정 내용 반영</td>
</tr>
<tr>
<td><신설></td>
<td>【별표 제7호】
<u>하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특별사후관리심사 대상 선정 기준</u>
1. 최근 3년 하자* 누적건수가 아래 표의 ‘군납액별 특별사후관리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td>
<td>하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특별사후관리심사 대상 선정 기준 추가</td>
</tr>
<tr>
<td><신설></td>
<td colspan="2">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배점</th><th rowspan="2">군납액별 특별사후관리심사 요건</th></tr>
<tr><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d>5점</td></tr>
<tr><td rowspan="2">최근3년 하자 누적건수</td><td colspan="2">2건</td><td>3~4건</td><td>5~7건</td><td>8~10건</td><td>11건 이상</td><td rowspan="2">• 0~50억원 미만 : 1점 이상
• 50~100억원 미만 : 2점 이상
• 100억원~200억원 미만 : 3점 이상
• 200억원~1000억원 미만 : 4점 이상
• 1000억원 이상 : 5점 이상</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 고</th></tr>
<tr><td></td><td>* 사용자불만사항 중 하자로 판정하여 하자처리요구를 한 경우(요구일자 기준 산정)
* 동일계약·동일 로트·동일품목 에서 발생한 다수의 하자는 1건으로 산정

2.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지정이 3건에 해당되는 경우

* 하자 및 부정당제업체 제제 누적건수는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사항만 해당</td><td></td></tr>
<tr><td>【별지 제1호 서식】

<u>인증 신청서</u>
<table><tr><td>ⓔ신청 범위 및 활동</td><td></td></tr><tr><td rowspan="3">ⓕ<u>주 소</u></td><td>대상사업장(주사업장)</td></tr><tr><td>□지원사업장</td></tr><tr><td>□복수사업장</td></tr></table>【작성요령】

ⓔ 신청범위 및 활동 : 인증분야 및 분류 지침(별표 제3호)에 따른 <u>소분류의</u> “설계, 개발 및 제조” 또는 “제조”로 표기
* 칸이 부족한 경우 을지 사용 가능
ⓕ <u>주소 : 인증신청 대상이 되는 주사업장(공장)의 주소 작성</u>
<u>- 지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원 사업장(연구소, 영업 등)의 주소 작성</u>
<u>-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장의 주소 작성</u></td><td>【별지 제1호 서식】

<u>인증 신청서</u>
<table><tr><td>ⓔ신청 범위 및 활동</td><td>(　　)의
□ 설계, 개발 및 제조
□ 제조
* 제조는 함정건조를 포함)</td></tr><tr><td>ⓕ인증대상 사업장 (주 소)</td><td>(　　)</td></tr></table>【작성요령】

ⓔ 신청범위 및 활동 : 인증분야 및 분류 지침(별표 제3호)에 따른 소분류와 “설계, 개발 및 제조”, “제조”로 표기
* 칸이 부족한 경우 을지 사용 가능
ⓕ 인증대상 사업장 : 주소 : 인증신청 대상이 되는 사업장 명과 주소 작성
*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모두 표시
예) 1. 000사업장(00시 00로)
2. △△△사업장(000시 000로)
3. 본사(xx시 xx로)</td><td>지원 및 복수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증대상이 되는 사업장 모두 작성토록 함.

오기수정

지원 및 복수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증대상이 되는 사업장 모두 작성토록 함.</td></tr>
<tr><td>[별지 제6-4호 서식] 부적합통보서

[작성요령]
ⓐ 통보서 번호 : 아래와 같이 부여</td><td>[별지 제6-4호 서식] 부적합통보서

[작성요령]
ⓐ 통보서 번호 : 아래와 같이 부여</td><td></td></tr>
</table>

현 행	개 정(안)	비 고
(중략) nn : 통보서 일변번호 <추 가> ⓑ (생략) ⓒ 대상부서 : 부적합 발생 부서명 ⓓ (생략) ⓔ 심사요건 : 심사요건 항목번호 및 항목명 ⓕ (생략) ⓖ 부적합사항 :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사례를 기술 ☞ 피심사자가 근본원인을 찾아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작성 ⓗ ~ ⓛ (생략)	(중략) nn : 부적합사항의 일련번호 *통보서는 일련번호 단위로 작성 ⓑ (현행과 동일) ⓒ 피심사부서 : 심사를 받은 조직의 부서명 ⓓ (현행과 동일) ⓔ 규격 요구사항 : 부적합사항에 해당되는 국방규격 요구사항의 항목번호 및 항목명 ⓕ (현행과 동일) ⓖ 부적합사항 - 규격 요구사항 : 부적합에 근거가 되는 규격 요구사항을 기술 - 조직의 요구사항 : 부적합에 근거가 되는 조직의 요구사항(품질경영체제 내 매뉴얼, 프로세스, 절차서, 규정, 지침 등)을 기술 - 부적합 내용 :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사례를 기술 ☞ 피심사자가 근본원인을 찾아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작성 ⓗ ~ ⓛ (현황과 동일)	